

#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03. 1. 9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설치목적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주민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종류 (안 제4조, 제5조)
- 다.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임무 (안 제6조, 제7조)
- 라. 사업비 배분기준, 지원비율, 지원대상 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- 마. 사업비 신청, 집행, 지출 (안 제11조, 제13조, 제14조)
- 바. 결산보고 등 (안 제20조)

3. 법적근거 :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

4. 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## 5. 입법예고

- 가. 예고기간 : 2002. 12. 7 ~ 12. 26 (20일간)
- 나. 예고방법 : 일간신문 게재
- 다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: 없음

## 사천시 조례 제 호

### 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시행령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·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업계획수립) ①해당 면장은 리(마을)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,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

②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주민지원 대상지역)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.

제5조(주민지원사업의 종류)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.

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1조를 준용한다.

제6조(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) ①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면장으로 하고,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외에 리(마을)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임무)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
2.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
3.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

제8조(사업비 배분기준) ①해당 면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.

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③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.

제9조(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) ①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대상) ①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,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안 제외지역(자연마을 등)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주민지원사업신청) ①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[별지 제1호서식] 에 의해 해당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해당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2조(사업비 지원통보) 해당 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업비의 집행) 주민지원사업비는 사천시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1.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중 해당 면장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직접 집행한다.

가. 간이상수도

나. 농로 및 농수로

다. 마을회관

라. 공동저장고

마. 저온공동저장고

바. 공동작업장 등

2.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.

가. 농기계

나. 톱밥제조기

다. 유기질비료

라. 묘목 등

3.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,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, 소요사업비의 적정성

여부를 검토하고,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면장이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

제14조(사업비 지출) ①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.  
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.

제15조(착수금 반환) ①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9조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해당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  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.

제16조(자금집행 상황보고) 해당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[별지 제2 호서식] 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용도의 사용금지)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  
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.

제18조(감독) 해당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사업취소) 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.

②전항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
③해당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결산보고) 해당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국고보조금관리규정에 준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결산보고서를 [별지 제3호서식] 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 [별지 제4호서식] 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주민지원사업 신청서

(직접지원 사업)

① 지원사업의 종류				
② 사업명				
③ 사업량				
④ 사업비	계	기금	자부담	기타
⑤ 사업장소				
⑥ 사업기간				
⑦ 사업시행일				
⑧ 사업시행자				
⑨ 기타				

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 : (인)

(일반전화 : )

추천인 00마을 00리장 (인)

00면장 귀하

붙임서류 : 토지 및 건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, 사업비 산출내역서



[별지 제3호서식]

분류번호  
수 신 : 사천시장

년 월 일  
발신 : 00면장 (인)

(단위:천원)

결 산 보 고 서			
( 년 월 일)			
수 입 지 부		지 출 지 부	
과 목	금 액	과 목	금 액
① I.전기이월금 1. 현 금 2. 예 금		⑤ I. 주민지원사업비 1. 소득증대사업비 2. 복지증진사업비 3. 육영사업비 4.오염물질정화 사업비 5. 직접지원사업비	
② II.기 금 1. 현 금 2. 예 금			
③ III.국 고 1. 현 금 2. 예 금		⑥ II.차기이월금 1. 현 금 2. 예 금	
④ IV.기타수입 1. 수입이자 2. 기타수입			
합 계		합 계	

## 작성방법

- ① 전기이월금란 : 당해 면에서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
- ② 기금란 : 당해 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
- ③ 국고란 : 당해 년도 국고(농특세, 양여금 등)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
- ④ 기타수입란 : 당해 년도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
-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: 당해 년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
- ⑥ 차기이월금란 : 회계년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

[별지 제4호서식]

(단위 : 천원)

단 위 사 업 실 적 서				
①사업구분				
②사업명				
사업시행자				
③사업장소				
	구 분	계 획	실 적	
	④사업량(%)			
	⑤사업비	기 금		
		국 고		
		기 타		
계				
⑥도급자				
⑦착공년월일		⑨준공년월일		
⑧준공예정일		⑩검사년월일		
⑪취득 및 사후관리				
⑫준공내역	<구체적으로 명시>			
첨부서류 : 1. 착공전, 공사중, 준공후 사진 각 1매 2. 사업비지출결의서,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				

## 작성방법

- ①②③ 사업구분, 사업명, 사업장소란 :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
- ④ 사업량란 :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
- ⑤ 사업비란 : 기금,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
- ⑥ 도급자란 :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
- ⑦ 착공연월일란 :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
- ⑧ 준공예정일란 : 공사기간의 마지막일
- ⑨ 준공연월일란 :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,  
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
- ⑩ 검사연월일란 :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
-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: 취득·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
- ⑫ 준공내역란 :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(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)